

#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335
------	------

2021. 4. 22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4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2021.4.22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조인동)

#### 1. 제안이유

가. 지역개발기금은 일반·특별회계 전입금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.

나. 지역개발기금 설치 이후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실적 저조 등 기금 활용도가 낮아,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여 자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
나. 기금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과조치를 두고, 다른 조례의 지역개발기금 관련 사항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기금으로서의 활용도와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지역개발기금 운영 현황

- 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.
  - 기금은 종전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인 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”로 관리·운영되었으나 2017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·시행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음.
- 그 동안 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걸쳐 2,991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,500억원과 서울주택공사에 1,442억원을 용자 지원했고, 현재는 모두 회수된 상태임.
  - 7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채권상환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, 2008년 발행한 채권의

미상환액 5억 5백만원은 2020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.

<지역특별회계 채권발행 및 용자실적>

(단위 : 억원)

구분	'06	'07	'08	'09~'12	'13	'14	'15	'16~'20
채권발행내역	1,489	-	1,502	-	-	-	-	-
이자지출	-	-	-	-	270	-	272	-
상환내역	-	-	-	-	1,489	-	1,502	-
용자내역	-	1,500 (도기본)	1,442 (SH공사)	-	-	-	-	-
용자회수	-	-	-	-	1,500 (도기본)	-	1,442 (SH공사)	-

- 2021년 기금의 운용 규모는 66억 9천 6백만원이고, 주요수입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탁금과 예치금 원금회수이며, 지출은 예치금으로 운용되고 있음.

<지역개발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1(A)	2020(B)	증감(A-B)	비고
<b>수입</b>	<b>6,696</b>	<b>1,175</b>	<b>5,521</b>	
예치금회수	1,179	1,043	137	
예탁금회수	4,900	-	4,900	이자율(1.71%)
이자수입	112	132	△21	공공예금 이자수입(1.71%) 및 통합계정 예탁(49억원)에 대한 이자(1.71%)
기타수입	505	-	505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
<b>지출</b>	<b>6,696</b>	<b>1,175</b>	<b>5,521</b>	
예치금	6,696	1,161	5,521	
기본경비		14	△14	

## 다. 기금 폐지의 타당성 여부

-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,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음.
- 하지만,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, 기 발행된 채권 상환과 용자도 2015년에 모두 회수되어 기금 폐지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.
-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권보유자들의 환매권리 보장(상환일로부터 5년)과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기금을 계속 존속해 왔음.

### < 지역개발채권 개요 >

- 대 상 :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
  - 방 법 :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목표금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출가능
  - 상 환 :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, 이율 1.25%
- ※ 소멸시효 : 상환개시 후 5년('06년 발행→'18년, '08년 발행→'20년)

- 그러나, 2020년 12월로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, 지난 6년간 기금의 활용도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즉각적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도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행정안전부의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도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이미 2021~2025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정비 계획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음.
- 한편,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의 모든 권리·의무가 승계되며, 2020회계연도 결산잉여금도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기금폐지에 따른 자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므로 타당함.

- 기금이 폐지되면, 예치금 회수 12억원, 예탁금 회수 49억원, 이자 수입 1억원, 채권 미상환액 5억원 등 총 67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3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개발기금은 일반·특별회계 전입금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.
- 나. 지역개발기금 설치 이후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실적 저조 등 기금 활용도가 낮아,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여 자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- 나. 기금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과조치를 두고, 다른 조례의 지역개발 기금 관련 사항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입법예고('21. 3. 9.~3. 29.)결과: 의견없음



##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.  
②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2020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를 거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간투자사업, 지역개발기금”을 “민간투자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으로,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### 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가연(02-2133-6866)